

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 제1항 중 “11인 이상 19인 이내”를 “11인 이상 50인 이하”로 한다.

제 6 조 제3항 제7호를 삭제한다.

제18조 제2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수목생육에 지장이 초래되어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경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

제20조 제1항 중 “금액의 2배를”를 “금액으로” 한다.

제32조 본문 단서 중 “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서”를 삭제한다.

제48조 제1호 및 제2호 중 “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”를 각각 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(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9조 제1항 제1호 중 “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”를 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(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)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도표의 “판매시설, 숙박시설, 관람집회시설, 전시시설” 중 주거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용 도	지 역 구 분	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			
		2천제곱미터 미만		2천제곱미터 이상	
		외벽의 각 부분 (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)	처 마 끝	외벽의 각 부분 (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)	처 마 끝
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	전 용 일 반 주 거 지 역	4	3	6	5
	준주거지역	3	2	4	3

제53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.

[별표 3]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바. 자동차 관련시설(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)

[별표 4] 제1호 차목 중 “주유소 및 충전소”를 “주유소,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, 석유 및 가스판매소”로 한다.

[별표 10] 제1호 다목 중 “기술계학원”을 “기술계학원,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”로 하고, 동호 “라목 내지 아목”을 각각 “마목 내지 자목”으로 하며,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라. 판매시설(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)

[별표 11] 제1호 “아목 내지 파목”을 각각 “자목 내지 하목”으로 하고,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아. 판매시설(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.)

[별표 12] 제1호 마목 중 “직업훈련소”를 “직업훈련소,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”로 하고, 동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자. 판매시설(농, 축, 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)

[별표 15] 제1호 중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사. 관람집회시설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된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한 것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.

사하구건축조례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제4조(구성)	제4조(구성)
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<u>11인 이상 19인 이내</u>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① <u>11인 이상 50인 이하</u> 의.....
②~④ 생략	②~④ 현행과 같음
제6조(회의)	제6조(회의)
①~② 생략	①~② 현행과 같음
③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서 “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.	③
1.~6. 생략	1.~6. 현행과 같음
7. <u>사전 결정대상 건축물로서 사전 결정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</u>	7. <u>삭제</u>
8.~9. 생략	8.~9. 현행과 같음
④ 생략	④ 현행과 같음
제18조(대지안의 조정)	제18조(대지안의 조정)
① 생략	① 현행과 같음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	②
1.~5. 생략	1.~5. 현행과 같음

현	행	개	정	(안)
(신 설)				6.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수목 생육에 지장이 초래되어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경전문가의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
제20조(조경공사비의 예탁 등)		제20조(조경공사비의 예탁 등)		
①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 취득자가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조경공사 내역서상의 금액의 2배로 한다.		①		금액으로 한다.
② 생략		② 현행과 같음		
제32조(대지안의 공지)		제32조(대지안의 공지)		
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 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<u>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서</u> 주된 도로의 너비가 15미터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	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 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주된 도로의 너비가 15미터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	
1.~5. 생략		1.~5. 현행과 같음		

현행	개정 (안)
제48조(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) 본문 생략	제48조(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) 본문 현행과 같음
1.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으로부터 다음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.	1.
다만, 전용공업지역, 일반공업지역 또는 <u>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</u> 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... <u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(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)</u>
이하 도표 생략	이하 도표 현행과 같음
2.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으로부터 다음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. 다만, 전용공업지역, 일반공업지역 또는 <u>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</u> 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2. <u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(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)</u>
이하 도표 생략	이하 도표 현행과 같음
제49조(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)	제49조(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)
① 본문 생략	① 본문 현행과 같음

현	행
1.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부터 다음표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야 한다. 다만, 전용공업지역,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2. 본문 생략	

용도	지역구분	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			
		2천제곱미터 미만		2천제곱미터 이상	
		외벽의 각 부분 (...)	처마 끝	외벽의 각 부분 (...)	처마 끝
판매시설, 숙박시설, 관람집회 시설, 전시시설	주거지역	4	3	6	5
	기타지역	2	1	3	2

3.~4. 생략
② 생략
제53조(은돌의 시공 등)
① 본문 생략
1.~2. 생략

개	정	(안)
1.		
.....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(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).....		
2. 본문 현행과 같음		

용도	지역구분	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			
		2천제곱미터 미만		2천제곱미터 이상	
		외벽의 각 부분 (...)	처마 끝	외벽의 각 부분 (...)	처마 끝
판매시설, 숙박시설, 관람집회 시설, 전시시설	전용, 일반 주거 지역	4	3	6	5
	준주거 지역	3	2	4	3
	기타 지역	—	—	—	—

3.~4. 현행과 같음
② 현행과 같음
제53조(은돌의 시공 등)
① 본문 현행과 같음
1.~2. 현행과 같음

현행	개정 (안)
3. 특정 열시공기자재의 설치, 배관 및 세관에 대하여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자로 한다. ②~⑤ 생략 [별표 3]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(제23조 제1호 관련) 1.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.~마. 생략 (신 설) [별표 4]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(제23조 제2호 관련) 1.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.~자. 생략 차.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<u>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한다.</u>) 카.~너. 생략	3.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 ②~⑤ 현행과 같음 [별표 3] 1. 가.~마. 현행과 같음 <u>바. 자동차 관련시설(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)</u> [별표 4] 1. 가.~자. 현행과 같음 차.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<u>주유소, 액화석유가스 충전소, 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한다.</u>) 카.~너. 현행과 같음

현행	개정 (안)
[별표 10]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(제23조 제8호 관련) 1.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.~나. 생략 다. 교육연구시설(<u>기술계학원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</u>) (신 설) 라. 군사시설 마. 기숙사(<u>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</u>) 바. 의료시설 사. 전시시설(<u>산업전시장, 박람회장에 한한다</u>) 아. 방송, 통신시설	[별표 10] 1. 가.~나. 현행과 같음 다. 교육연구시설(<u>기술계학원,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</u>) 라. 판매시설(<u>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.</u>) 마. 군사시설 바. 기숙사(<u>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</u>) 사. 의료시설 아. 전시시설(<u>산업전시장, 박람회장에 한한다</u>) 자. 방송, 통신시설
[별표 11]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(제23조 제9호 관련) 1.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.~사. 생략	[별표 11] 1. 가.~사. 현행과 같음

현행	개정 (안)
(신 설) 아. 방송, 통신시설 자. 군사시설 차. 교정시설 카. 청소년수련시설 타. 동물관련시설 파. 의료시설 [별표 12]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(제23조 제10호 관련) 1.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.~라. 생략 마. 교육연구시설(국민학교, 중학교, 고등학 교, 교육원, 기술계학원, <u>직업훈련소</u> 및 도 서관에 한한다) 바.~아. 생략 자. 판매시설(<u>농·축·수산물 판매시설</u>에 한한 다) 차.~버. 생략	아. 판매시설(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) 자. 방송, 통신시설 차. 군사시설 카. 교정시설 타. 청소년수련시설 파. 동물관련시설 하. 의료시설 [별표 12] 1. 가.~라. 현행과 같음 마. 교육연구시설(국민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교육원, 기술계학원, <u>직업훈련소</u>, 공업에 관련 되는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) 바.~아. 현행과 같음 자. 판매시설(<u>농·축·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 품을 판매하는 시설</u>에 한한다) 차.~버. 현행과 같음

현행	개정 (안)
[별표 15]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(제23조 제13호 관련) 1.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.~바. 생략 사. <u>관람집회시설 중 관람장</u> 아.~하. 생략	[별표 15] 1. 가.~바. 현행과 같음 사. <u>관람집회시설</u> 아.~하. 현행과 같음